

「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13:00

장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NIBP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일정표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13:00~15:00

□ 장소: 세종호텔 3층 세종홀

□ Program

시 간	내 용		
13:00~13:05('5)	개회사 백수진 원장 직무대행(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인사말 성재경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13:05~13:45('40)	주제 발표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방안(안) 백수진 센터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13:45~14:45('60)	좌장: 이윤성 명예교수 (서울의대)	지정 토론	(시체제공기관) 박성혜 교수(서울대병원) (의과대학) 김인범 교수(가톨릭의대) (임상 및 연구현장) 김형진 교수(은평성모병원) 정용근 교수(서울의대) (기증 관리 실무) 이경진 팀장(강원의대) (시민전문가) 강인선 부장(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윤이레 연구교수(이화여대) (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생명윤리정책과)
14:45~15:00('15)	전체 토론		
15:00	폐 회		



주제발표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방안(안)



백 수 진 원장 직무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체 기증자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증자 예우 및 지원 방안(안)

2023. 11. 2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 수 진



목차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배경 및 연구 개요
-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개선방향 및 주요 개선 방안(안)
 - 제도적 개선 방안
 - 정책적 개선 방안

배경 및 연구 개요



연구 배경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1962년 시체해부보존법 제정 이후 의과대학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및 정착
- 연구용 시체 및 시체 일부의 연구목적 이용 요구 증가에 따라, 인체자원 활용을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개정('20.4.) →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포괄적 의생명과학 연구목적 활용으로 연구 범위 확대 : (과거) 사인의 조사와 병리·해부학적 연구 → (현재) 바이오 분야 연구
 - 시체 및 시체의 일부 제공을 위한 기관 허가제 도입 및 뇌 은행 지원 사업 등 연구 지원 기반 마련
 -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BUT, 개선 및 활성화 실적 미흡
 - 기관의 자율적 운영 및 개선에 의존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제도에 대한 편차로 인한 불균형 등에 기인

❖ 법적 근거

법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2(시체에 대한 예의)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 시체의 해부, 보존, 연구, 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연구 개요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수행 중

- 사업명 : 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백수진)
- 사업기간 : 2023. 9. 1. ~ 2023. 11. 30.(3개월)
- 연구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생명과학연구에서 이용 활성화 도모했으나, 현실 변화 무
 - 기관별 편차 크나, 교육용 시신 기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증 문화 활성화 없이 한계
 -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도 중요
 - 현실을 고려한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연구 내용

- 국내외 제도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사후 기증 및 활용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 등
- 기관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 조사 및 분석
 - 선행 연구 분석
 - 종사자 대상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유족 및 대국민의 인식 조사
 - 기증자 유족 대상 설문 조사
 -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

주요 국내외 제도 및 현황 분석 결과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기증 의사 확인 방식 : 생전 본인의 의사 (+ 가족의 허락)

- 기관 자율적인 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와 상담 등
- 시체법 상 동의서 외 기관별 임의 양식(부검 동의서 등) 추가 활용 등

➤ 사망 후 기증 절차의 수행 주체와 근거 : 제도적 차이

- 국내 제도의 특징 ★ 목적별 규제 법률 상이 → 추가 마련 시,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 간 조화 등의 검토 미흡
 - 1962년 시체해부보존법 제정 → 2020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2000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62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망 후 24시간 내 운구, 부검 및 안치, 화장 등 장례 전후 관련 절차 → 지자체 및 기관별 상이하게 적용
 - 교육 및 연구용 시신 기증에 대한 혜택이 있는 지자체 5개에 불과

지자체 조례 220개 조사 및 분석 결과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조례(153건) ☞ 사업 운영 57개, 일부만 운영 8개, 예산 책정 132개
-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조례(67건) ☞ 사업 운영 31개, 예산 책정 7개
- ✓ **교육 및 연구 목적 시신 기증 대상 사용료 감면 적용 → 5개 지역(대구광역시, 익산시, 천안시, 제천시, 의성군)이 유일**
 - 주요 내용
 - 기증자 추모 관련 근거 18개 조례(시행 지역 없음)
 - 시설물 사용료 등 감면 근거 63개 조례(시행 지역 30개)
 - 유족 심리 지원 근거 51개 조례(시행 지역 없음, 4개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과 프로그램 연계 예정)
 - 유족 대상 위로금 등 지급 근거 24개 조례(시행 지역 15개)
 - 진료비 감면 등의 근거 11개 조례(시행 지역 5개) 필요
 - ❖ 문제점
 - 관련 제도 및 조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개 미흡(홍보 필요)
 - 인력 및 예산 부족(적극 행정 사실상 불가)

❖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 ✓ 일부 기관 자율(기증 상담, 사후 장례 절차 지원 등), 기관 특성 및 지역별 편차 큼
 - 정부 지원 사업(뇌 은행 관련)에서 일부 지원 가능하나, 수행 기관 및 지역별 편차 존재

❖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 ✓ 의대 내 실습생 중심으로 연례 추모 행사 또는 일부 종교 기반의 기관에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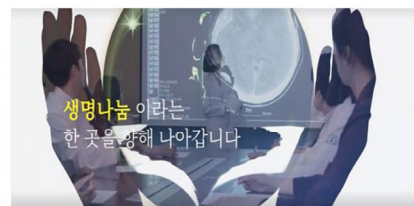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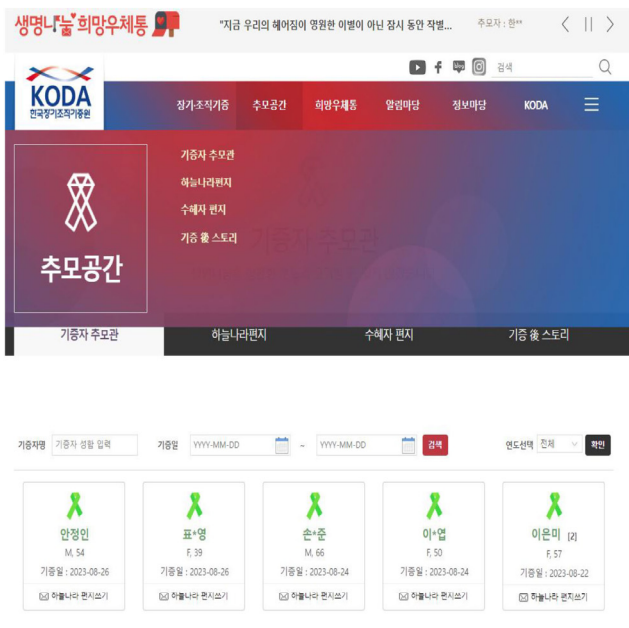
❖ 시체의 해부, 보존, 연구, 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 ✓ 사실상 부재
 - 정부 지원 사업(뇌 은행 관련)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교육 및 홍보 내용 비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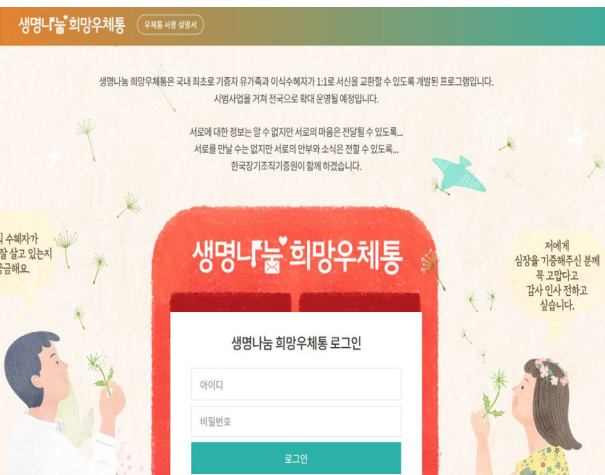
❖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 ✓ 사실상 부재

한국장기조작기증원 사례



→ KODA 공식 홍보 영상 중 캡처하면



❖ 미국

- 개정통일시신기증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에 근거
- 각 주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 제정 및 시행
- AGA(Anatomical Gift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일리노이주의 의료 연구 및 교육기관을 위한 시체기증 프로그램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 연간 약 400구 시체 기증 및 관리
 - 협회 내 의과대학 등 인증받은 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체 제공, 회수, 화장 진행 후 유골함 전달 프로세스 진행
 - 전신 기증 시 장례 및 매장 비용 제한적 지원 가능(화장비 부담)
- 하버드대학교
 - 부검 또는 방부 처리된 시신 등 기증 불가 여부 확인(대학) 후 기증 여부 결정(24시간 내 이송)
 - 유골 반환 또는 지정된 묘지에 안장하고 매해 가을 추도식

❖ 영국

- Human Tissue Authority(이하 HTA)의 Code of Practice and Standards B에 근거
- 시체 부검 후 예우와 기관의 의무 명시
 - 1) 기증자 및 가족의 희망에 따른 처리 방식이 존중될 수 있는 방침과 절차 마련
 - 2) 기증자 및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기관의 의식(문화나 종교에 대한 존중 要)
 - 3) 기관 내 종사자(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4) 가족에 대한 시신 인도 전 기록·확인을 위한 기관 내 시스템 구축
 - 5) 시신 처리 전 가족의 재회 기회 부여 및 가족의 문의에 따른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 이행
- 캠브리지대학교
 - 시신 운구 지원(반경 40마일 초과 시 유족 부담)
 - 화장 또는 매장 전 합동 장례(당해 기증 시신으로 교육 받은 학생과 교직원 참석, 유가족 참석 불가)
 - 유골 반환 요청 시 수수료 부담
 - 유족에게 감사 편지, 교내 교회에서 추모식 개최

❖ 일본

-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헌체에 관한 법률(医学および歯学の教育のための献身に関する法律) 제정
- 교육 목적의 시체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재고와 기증 의사에 대한 존중 및 기증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쿄대학교

- 기증 불가 요건 확인 및 유족 동의 후 이송
- 유골 반환 시 이송 동의한 가족에게 연락(화장 입회 시, 3개월 전 연락)
- 위령제, 해안 공양, 유족에게 감사장 전달(화장 또는 해안 공양 시 유족 참석)

Cf. 국립대만대학교

- 기증 불가 요건 확인 및 기증 유가족 동의(배우자)직계혈족(부모)형제,자매 순) 필요
- 실습 전 추모식(기증자의 삶에 대한 소개)
- 유족에게 감사 편지, 매년 3~4월 추도식 개최

종사자 대상 조사 관련 주요 결과

➤ 기관 내 운영 상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사항

-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공익광고 등) 제작 및 배포 등
- 기증 희망자에 대한 관리 지원(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스티커 부착 등)
- 기증자 본인 의사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동의 등 불가피한 현실
 - 가족이 있는 경우, 사실상 사망 신고, 운구 등 절차 상 진행을 위한 허락 필요
 - 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의사 있어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은 현실 등
- 기관 및 지역별 편차
 - 화장료 감면 및 장례비 지원 여부 등

➤ 기증 전, 후 정부에 의한 정보 포털 운영 및 관리 등 표준화 및 지원의 필요성 제기

유족 및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결과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시신 기증 경험이 있는 유족 28명 대상

- (For 기증자 예우)
 - **시신기증후정보제공** > **시신기증행정 절차지원** > 화장시설등이용료 감면 > 심리상담등정서적 지원
- (For 유족)
 - **시신기증후정보제공** > 시신기증자를 위한 추모행사(공간/물품 등), 시신기증 행정 절차지원, 화장료등이용료 감면 > 기증자가족에 대한 지원
- (For 기증 문화 활성화)
 - 국가차원에서 시신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또는 시신기증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 행사 등 지원
 -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등 시신기증 **현황 파악, 체계적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매우 필요 53.6%, 필요 28.6% → 82.2%)

➤ '23.10.31.~10.23, 전국 일반인 500명 대상

- 시신기증 활성화 과제
 - **기증자 예우 중요도** 4.25점(5점 만점) > 기증자가족 지원중요도 4.00점
- 기증 문화 활성화 기여도 측면
 - **금전적 지원**(4.2점) > 시설 이용료 감면(4.18점) > 행정절차 지원(4.04점)
- 지원 및 관리 방식 및 방향
 - 법률에 따른 **장부 지원**(54.4%) > 전담 기관 설치 및 운영(21.2%)
 - 시신기증 현황, 기증후 정보 공개를 통한 기증 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전국 단위 홍보 필요
 - 시신기증 **현황 파악 및 예우와 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필요(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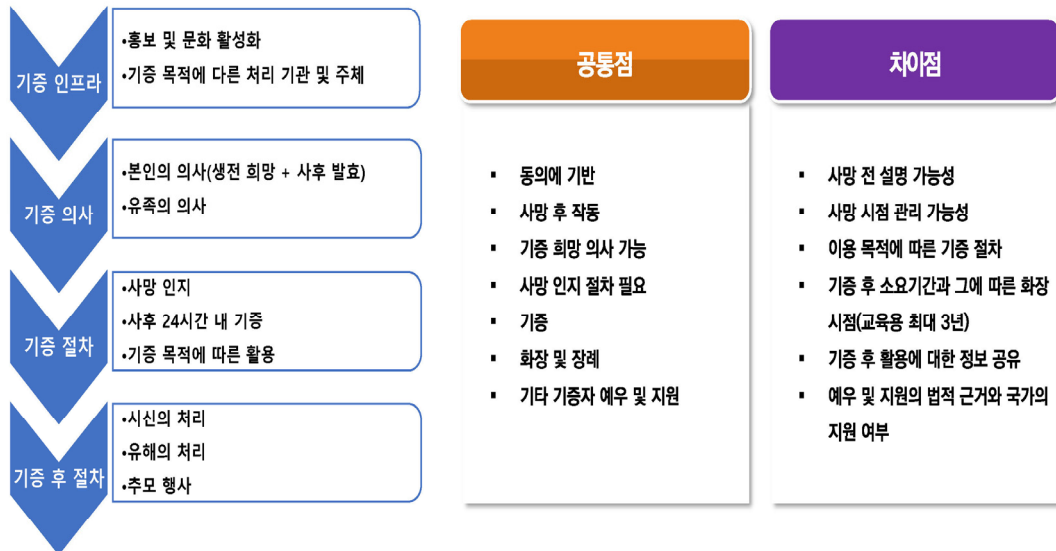
주요 쟁점 및 문제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사후 기증의 공적 가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 적절한가?!

➤ 치료(의료) 목적의 기증 / 교육 목적의 기증 / 연구 목적의 기증



문제점(1)

1. 기증 의사 존중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체계 상이

- ✓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통합 관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 기증 희망 등록을 통한 기증자 의사 존중 체계 마련
 - 기증 희망자 조회 및 표시(07.9.28.부터 운전면허증에 표시)



장기기증 의사표시 스티커



But, 시신 기증은 비체계적(기관별 자율적인 관리에 의존) → 기관의 편차 大 → 기증 문화 저해 요소로 작용

2. 추모 행사 등 차이로 인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수준 차이 발생

- ✓ 기증의 숭고한 뜻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정보 제공 → 가족에 대한 지원 → 긍정적 경험 중요

But, 기관 및 지역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부정적 경험 축적 → 기증 문화 저해 요소로 작용

3. 사회의 기증 문화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노력 부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 ✓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미흡
- ✓ 기증 현황 파악 시스템 부재

4. 관리 체계 부재

- ✓ 무엇이 문제인가?!
- ✓ 현장의 어려움은 상존
- ✓ 문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등 관리 근거, 주체, 이유 등 사실상 부재

개선방향 및 주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안)

1. 기관의 자율적 운영 존중 및 재량권 인정과 효율적 지원

- ✓ 기관 특성에 따른 운영 방식 인정 +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

2. 정부의 역할과 목표 설정

- ✓ 기증 문화 활성화

- 추모관 등 기증자 예우와 가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공간(사이버 공간 및 실제 생애 공원 내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을 통한 추모 기능)
- 연 1회 '기증자의 날' 지정 및 운영 지원 등

- ✓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한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족 및 사회적 신뢰 확보에 중요)

3. 제도적, 정책적 지원 범위 마련 및 실질적 관리 체계 구축

- ✓ (기증 의사 존중) 기증 희망자 등록 제도에 사신 기증 추가 표시 지원

- 본인의 명시적 의사로 기증 가능한 환경 지원 및 조성 필요

- ✓ (유족이 원하거나, 가족이 없는) 기증자에 대한 화장료 감면, 유택 동산 이용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 (정보 표준화) 기관 및 지자체 역할 및 관리 체계 등 기증을 위한 정보의 통합 제공 및 공유, 지자체 지원 수준 표준화 등 유도

제도적 개선방안

➤ 법률 정비 또는 개정 필요한 사항

- ✓ 기증 희망자 등록 및 관리 근거 마련

<참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기증자에 대한 화장료 감면 등 예우 표준화(법적 근거 마련)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

➤ 기관의 운영 효율화 및 지원

- ✓ **기증 전, 후 정보 포달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 → 정보 표준화**
 - 각 기관 및 지자체 현황에 대한 연락 가능한 정보
 - 기증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 등 업무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
- ✓ **기증 홍보 영상 및 추모 행사, 공간 등에 대한 기획과 지원 사업 등 기획 시행**
 - 기증 제도의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 → 기증 목적에 따른 선택권 보장하되, 기증 의사에 대한 공적 가치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일한 취급 타당
- ✓ **기증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 표준화 등 필요
 - 다만, 관리 목표에 대한 정책적 합의 필요에, 기관 자율의 영역과 지원을 위한 관리의 영역 구분 필요
- ✓ **기증 절차 및 관리 시 지역 네트워크 활용**
 - 기증 수요 및 시신 활용을 위한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 → 효율적 인배 및 관리
 - 미국의 AGA와 같은 비영리 법인을 통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 → 중앙 센터 관리 후 권역별 분산 관리 방식의 2단계 접근 가능

➤ 정책 사업 기획 및 지원: 지원 방안 구체화 및 시행 관리 등 체계 마련

- ✓ (가칭) 기증 활성화 및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기증자 예우 및 유족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 위탁을 통한 시범 운영 등 가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 널 토 론



- ❖좌장 : 이운성 명예교수(서울의대)
- ❖토론 : 박성혜 교수(서울대병원)
 - 김인범 교수(가톨릭의대)
 - 김형진 교수(은평성모병원)
 - 정용근 교수(서울의대)
 - 이경진 팀장(강원의대)
 - 강인선 부장(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윤이레 연구교수(이화여대)
 - 성재경 과장(생명윤리정책과)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단
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NIBP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